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송경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4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송경택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용일, 김형재,
김혜지, 문성호, 박영한,
신동원, 이병운, 이상욱,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동 조례는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에 조성된 서울혁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서울시는 지난 10년 간 사회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서울시 최대 가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이에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북권을 대표하는 직주락융복합도시로 전면 재조성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혁신파크 운영은 금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서울혁신파크의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동 조례의 폐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1.1.에 시행한다.

문서 번호

2023101600000030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송경택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3.10.18.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년 말로 운영 종료될 예정인 서울혁신파크 관련 정책과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위한 폐지안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